

**참고**

**음식섭취 금지 시설(2021.3.29.부터)**

구분	현재 거리두기 체계		개편된 거리두기 체계
	1.5단계	2단계	단계 구분없이 적용되는 수칙
중점	콜라텍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콜라텍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공연장으로 재분류)
일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사설스포츠시설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사설스포츠시설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실외체육시설, 스포츠경기장 이미용업
기타	종교시설	종교시설	종교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

\* ㄷ자 칸막이가 있는 경우 음식 섭취 가능